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위원)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환경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사항 업무와 관련하여 조정 또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제4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하거나 국가기관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가지식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이하 “분쟁조정전문위원회”라 한다)

2. 그 밖에 제도개선, 표준화 등 전문분야별로 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 또는 실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②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쟁조정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그 밖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사건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전문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그 밖에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
2.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지원
4. 법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비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 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일 것
2. 해당 분야 국가지식정보의 생산·보유·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것
3. 해당 분야 국가지식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갖출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센터의 장은 해당 지식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 연계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의 최신성·정확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식정보의 생산·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지식정보센터의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

제11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 및 지식정보센터의 업무책임자로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정책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의 신청에 따라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대상이 되는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가지식정보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목적 및 사유
2. 연계하고자 하는 국가지식정보의 종류 및 내용
3.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연계 계획
4.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
5.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그 지정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2. 통합플랫폼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식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의 통합 검색
2. 국가지식정보 연계를 위한 분류체계(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조화된 기준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메타데이터(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구조, 속성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3. 국가지식정보 활용성,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에 연계되는 국가지식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이용자가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현황조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식정보의 연계·활용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지식정보의 보유현황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 제공 서비스의 시스템 현황에 관한 사항
3.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에 관한 사항
4. 국가지식정보의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현황에 관한 사항
5. 통합플랫폼을 통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관련 통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및 연계 현황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황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생산·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의 작성 및 관리방법

2. 국가지식정보의 연계방식

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생산·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지식정보 표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국가지식정보 표준 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

2. 국가지식정보 표준 관련 국제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과의 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이하 “민간사업자등” 이라한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의 출처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의 제목, 저자, 발행기관, 발행일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이하 이 조에서 “민간지식정보”라 한다)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그 민간지식정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등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계대상 민간지식정보에 관한 사항

2. 민간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 연계방식 등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민간지식정보의 권리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지식정보의 연계 및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지식정보와 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민간지식정보의 이용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사업자등과 국가지식정보 및 민간지식정보의 발굴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1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가지식정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분쟁조정전문위원장은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위원이 포함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조정부의 장 및 위원은 분쟁조정전문위원장이 사안별로 지명한다.

④ 분쟁조정전문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부의 의결절차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둔다.

제19조(다른 법률규정의 준용) ①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대하여서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다.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전문위원회”로 본다
2. “위원장”은 “분쟁조정전문위원장”으로 본다.
3.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로 본다.
4.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는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로 본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6. “공공기관”은 “국가기관등”으로 본다.

제20조(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계 및 활용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한다.

1. 실태점검의 목적

2. 실태점검의 대상 및 내용

3. 실태점검의 일자 및 방법

4.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통지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